

제 456 호

1974.8.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천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 차례

### ◎ 조례

제 868호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 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	3
--------	------------------------------------	---

제 869호	서울특별시 텁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4
--------	------------------------------	---

제 870호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비 정수수로 징수 조례	4
--------	----------------------------	---

### ◎ 규칙

제 1384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광고업무 규칙	5
---------	-------------------	---

제 1385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 협업 기관 설치 규칙	14
---------	--------------------------	----

### ◎ 고시

제 103호	도시계획시설 (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	33
--------	-----------------------	----

제 104호	• (도시고속철도) 지적승인	37
--------	-----------------	----

제 105호	• (도로) 지적승인	38
--------	-------------	----

제 106호	• (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	38
--------	------------------	----

제 107호	• (도시고속철도) 사업 실시	
--------	------------------	--

계획인가		40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4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재정자금 운용요강증 개정 공고	41
제 148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산업화, 전문제열화, 기업 합병 및 시설근대화 지원 자금 집행 요령증 개정 공고	41
제 14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산지정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 공고	42
제 150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산지정업체 대체 지정 및 변경 공고	44
제 151호	미수검증 기관 사회고 및 등록취소(예고) 공고	44
제 153호	주택개량을 위한 서빙고제 1. 고척, 북아현제 2 구역 및 아현제 2구역 1차 환지계획 공람 공고	45
제 155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 공고	45
◎ 사 령		46

## 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7. 2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경생

## ○ 서울특별시조례 제 868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증 개정조례

제정 66. 1. 28. 조례제 420 호

개정 74. 7. 26. 조례제 868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항중 「별지도표 제 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2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수입증지는 교육감이 발  
행하되 그 종류는 다음의 5종으  
로 한다.

1. 10 원
2. 50 원
3. 100 원
4. 300 원
5. 500 원

제 11조 제 5항중 「5원미만」을  
「10원미만」으로 한다.

##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  
행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와 병용한다.

도표제 1호



22 ■■■

19 ■■■

규격과 모양은 동일하고 종류는 하  
지와 같이 색깔로서 구분하여 종류표  
시는 해당 백면가를 넣는다.

10 원: 갈색, 50 원: 뉴색, 100 원:  
남색, 300 원: 자색, 500 원: 주황색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립도서관 사용료 정수조례증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7. 3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경생

49-4 제456호

시

보

1974.8.5

## ◎서울특별시조례제869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

조례증 개정조례

제정 1952.6.30. 조례제 15호

10차개정 1974.7.31. 조례제 869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 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중 "5인용

1실 1회 100원"을 "3인용 1실

1일 300원"으로, "30인용 1실

1회 200원"을 "5인용 1실 1일

500원"으로 한다.

제1조 제2항중 "30회"를 "1개  
월"로 "선납하여야 한다"를 "1  
개월을 단위로 선납하되 도서관  
휴관일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로 한다.제1조 제3항중 "전제1항, 제2  
호 및 제2항에서 1회라 할은"  
을 "전제1항에서 1회 또는 1일  
이라함"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중,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7. 3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속감사점명

## ◎서울특별시조례제870호

서울특별시립, 고등학교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74.7.31. 조례제 8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학교 또  
는 고등학교에 입학배정원서를 제출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학교 배정  
수수료(이하 "배정수수료"라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징수한도액) 배정수수료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정한 한도  
액을 초과할 수 없다.제3조(징수방법) ① 배정수수료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배정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 다만, 고등  
학교에 지원하고자 입학선발고사료를  
납입한자는 1회에 한하여 배정수수  
료를 면제한다.② 일단 납입된 배정수수료는 과오납  
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 639 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일학제정수수료 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별표

구 분	정 수 한 도 액.	비 고
고 등 학 교	300 원	
중 학 교	300 원	

## 규 칙

서울특별시지하철광고업무취급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1974년 7월 31일

## ⑤서 울 특 별 시 규 칙 제 138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광고업무취급 규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지하철(이하 지하철이라 한다)  
의 시설물에 부착 또는 첨부하는  
광고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경미화의  
조성과 광고취급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지하철의 광고취

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광고»라 함은 지하철의 시설물  
및 차량에 게첨하여 영업 또는  
상품을 선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로»라 함은 광고게첨을 위  
하여 지하철의 시설물 및 차량을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말한다.

3. «게첨인»이라 함은 광고주 및  
광고대행 취급인을 총칭한다.

제 4조(게첨장소) 광고물은 지하철  
차량, 역 및 그 부대시설 기타 용  
지내의 지정 장소 또는 업무상 지  
장이 없다고 일정되는 장소에 한하  
여 이를 게첨한다.

49-6 제 456 호

시

보

1974.8.5

<p>제 5 조(개첨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개첨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계법 규예 위반될 때</li> <li>2. 미판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때.</li> <li>3. 여객 또는 공중에게 불쾌감을 줄 때</li> <li>4.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li> <li>5. 기타 지하철의 업무상 광고의 개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li> </ol> <p>제 6 조(광고의 종류) 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보통광고 가. 역구내전기조명정형광고 나. 역구내전기조명특정광고 다. 역 포스트 광고 라. 차내액자광고(A형, B형)</p> <p>2. 특수광고 가. 전연판광고 나. 벤취광고 다. 승차위치광고 라. 출입문안내광고 마. 진열장광고 바. 기타잡종광고</p> <p>제 7 조(광고의 규격) ① 광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p>	
구 분	종 류	규 격
보 통 광 고	역구내전기조명정형광고	100 cm x 150 cm
보 통 광 고	역구내전기조명특정광고	파로 정합.
보 통 광 고	역 포 스 트 광 고	80 cm x 110 cm
보 통 광 고	차 내 액 자 광 고	A형 52 cm x 37 cm B형 50 cm x 26 cm
특 수 광 고	시 설 물 이 용 광 고	
	시 설 물 기 증 광 고	파로 정합
	잡 종 광 고	

<p>② 전광 이외의 광고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고의 면적은 데두리를 포함한 면적이 <math>1/4</math> 평을 지초 산정 단위로 한다.</li> <li>2. <math>1/4</math> 평 미만은 이를 <math>1/4</math> 평으로 하여 계산한다.</li> <li>3. 방형이 아닌것은 이를 포용하는 최소방형(最少方形)의 면적</li> </ol>	<p>에 의한다.</p> <p>제 8조(계첨기간) 광고의 계첨기간은 광고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행 취급의 경우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p>
---	---

종 유		기 간
보	역 구내 전기 조명 정형 광고	6 개월
통	역 구내 전기 조명 특정 광고	6 개월
광	역 포스터 광고	1 개월
고	역 내 액자 광고	1 개월
복 수 광 고		2 개월

<p>제 9조(계첨기간의 계산) 광고계첨기간의 계산은 계첨일로 부터 계산하여 1개월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p> <p>제 10조(기간의 계첨) 계첨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p>	<p>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광고를 계첨하지 아니한 일수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연장 계첨할 수 있다.</p> <p>1. 계첨불가능 사용자 계첨인의 계 사용에 인하지 아니할 때.</p>
--	--

<p>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광고의 계첨이 일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p> <p>3. 전 각호이외에 시장이 특히 인정할 때</p>	<p>2. 광고의 도안 및 설계 3. 광고의 제작 계첨 및 철거 4. 전등의 설치 5. 광고료의 납부 6. 광고물 단속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한 필요 절차</p>
<p>제 11 조(광고대행 취급인의 지정)</p>	<p>제 13 조(보증금의 예치) ①취급인은 계약광고로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p>
<p>①시장은 광고의 제작 및 계첨업무를 광고대행 취급인(이하 "취급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광고의 종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주에 대하여도 전항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1. 서울특별시내에 본사 또는 영업의 근거를 둔자. 2. 광고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1년이상 취급실적이 있는자. 3. 자력과 신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p>	<p>③전 2항의 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1. 광고료의 체납액 및 연체료 2. 대집행 비용 3. 손해배상</p>
<p>제 12 조(취급인의 업무) 취급인이 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광고주의 유치 및 허가절차</p>	<p>제 14 조(계첨허가) ①광고물을 계첨하고자 할 때에는 계첨인을 떨지 서식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전항의 하가를 한때에는 시장은 계첨인에게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한 하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계첨기간중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계첨하고자 할때에는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없을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p>	<p>고개첨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하가를 받았음이 판명될 때</li> <li>2. 이 규칙에 의하여 할하는 자 세 또는 명령을 위반할 때</li> <li>3.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광고로(보증금)를 남부하지 아니한 때</li> <li>4. 하가조건을 위반하여 계첨한 때</li> <li>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li> </ol>
<p>제 15조 (경합되는 광고의 승인) 등 일장소에 2이상의 광고계첨 신청인이 있을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일한다.</p>	<p>제 17조 (광고로의 산정) ① 광고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대행취급의 경우에는 계약요금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순위</li> <li>2. 광고의 내용</li> <li>3. 저하철업무와 관련되는 유익성</li> <li>4. 외장 및 도안</li> <li>5. 광고계첨의 실적</li> <li>6. 기타</li> </ol> <p>제 16조 (계첨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p>	<p>제 17조 (광고로의 산정) ② 역구내 전기조명광고는 계첨장소에 따라 역동급과 위치동급을 구분하여 광고로를 달리 산정하며 등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18조 (광고로의 남부) 모든 광고로는 반드시 선납하되 그 남부일자</p>

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대행취급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광고료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납부한다.
2. 기타 광고료는 광고게첨 3일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조 (광고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때
2. 저작권의 여객유치, 안내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행률을 계첨 할 때
3. 시설물을 기증하고 그 시설물에 기증인을 표시할 때
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20조 (광고로제산시의 단수처리)

광고료를 계산할 때 있어서 1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1원으로 한다.

제 21조 (일괄계산) 광고게첨기간을 일괄계산할 때에는 1개월 30일로 한다.

제 22조 (광고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 17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첨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였을 때
2. 계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계첨중의 광고물이 계첨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특히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저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료의 반환은 광고게첨 개일 때에는 이미 징수한 광고료의 전액으로 하고 계첨후 일 때에는 이미 징수한 광고료에서 계첨기간에 대하여 일괄 계산한 요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제 23조 (광고료의 불반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받은 광고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 17조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여 계첨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
2. 계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광고의 계첨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철회한 때

## 제 25 조 (광고물과 손해에 대한 책임)

(1) 시장은 계첨증에 발생한 광고물의 손상 또는 멸실등에 의한 계첨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광고물에 의하여 지하철 또는 계 3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계첨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실효된 경우에 광고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일의 처리하고 보관책임을 지지아니한다.

## 제 26 조 (광고물의 철거)

(1) 광고물의 계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첨허가가 취소 또는 철거된 때에는 계첨인은 지체없이 당해 광고물을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계첨인이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철거비용은 계첨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 27 조 (연체료)

광고로는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낭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일부터 기산하여 낭임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련 17 개의 연체료를 낭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로가 1,000 원 미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8 조 (업무검사)

시장은 광고업무 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취급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29 조 (권한의 위임)

이 규칙에 정하여진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하철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인의 자정요건 결정
2. 제 18 조제 1 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광고로의 결정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1호-서식

## 광고계첨허가신청서

상호 :

대표자성명 :

귀 지하철의 광고계첨시설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계첨하고자 신청하오  
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 명	등 급	※ 계첨장소	광 고 물		※ 수 량	계 첨 기 간	요 금
			종 별	형식 또는 규격			

197

신청인 (대행취급자)

①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귀하

1. 구비서류 (1) 사 양 서

(2) 허가서 (관할 경찰서 등 필요한 경우)

2. 주 의 (1) ※부분은 계첨신청인이 기입할 것

(2) 형식 또는 규격란에는 정형 또는 형식만 기입할 것

제 456 호

시 보

1974.8.5. 49-13

번지제2호서식

## 허가서

주 소

성 명 (대표자)

상 호

귀하가 신청한 광고개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 허가 내용

역명	등급	개첨장소	광고물		수량	개첨기간	광고로	납부기일
			종별	형식				

1974.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장

귀하

49-14 제 456 호

보 1974. 8. 5.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현업기관설치  
규칙을 이에 공고한다.

1974. 7. 3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규칙제 138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현업기관설치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지하철본부(이하 지하철본부라  
한다) 설치조례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본부에 설치하는 현  
업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제 1호와 같다.

제 3 조 (명칭과 위치) 기관의 명칭

과 위치는 별표제 1호와 같다.

제 4 조 (기관장) ① 기관에 기관장  
각 1인을 두며 그 직명은 별표  
제 1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기관의 업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  
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 (공무원) 기관에 기관장외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사무분장을  
별표제 2호와 같다.

제 6 조 (정원) 기관의 직명별 정원  
은 별표제 3호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 456 호 시 보 1974. 8. 5. 49-15

## 별표제 3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현업부서점원표.

구 분		일 반 제													
급여 등급별		4. 감				4. 을				5. 감					
기 편별	직 종별	지방 행정 주사	지방 기자기 사	지방 전력 기사	지방 통신 기사	소 계	지방 행정 주사보	지방 기자기 사보	지방 전력 기사보	지방 통신 기사보	소 계	지방 행정 주기원	지방 전기기 원	지방 신축기 원	소 계
	합 계	10	3	8	2	4	27	4	3	1	8	2	3		5
경리과	창고	1				1	1				1	1			1
는수과	서울역 앞	1				1									
	시청 앞	1				1									
	종각	1				1									
	종로3가	1				1									
	종로5가	1				1									
	동대문	1				1									
	신설동	1				1									
	제기동	1				1									
	청량리	1				1									
	운전사령실	1				1									
공무과	승무관리소	1				1									
	총무소			2		2			1		1	1			1
	차량공작소	1				1	1				1				
전기과	전력사령실		3			3		3			3		3		3
	전기소		1			1	1				1				
	신호보안소		4			4	4								
	통신소				4	4									
	소 계		8		4	12	1	3			4		3		3

49-16 제 456 호

시

보

1974. 8. 5.

구 문		일 반 칙													
급류및물급별		5	율	일	반	칙	계	소	통	소	전	전	총	신	계
직 중 별	기 관 별	지방행정서기원보	지방기재기기원보	지방전기기기원보	지방전축기기원보	지방통신기기원보	소	행	기	전	로	전	총	신	계
	합 계							16	3	14	3		4	40	
경리파	창 고								3					3	
운수파	서 울 역 앞							1						1	
	시 청 앞							1						1	
	중							1						1	
	로 3 가							1						1	
	종 5 가							1						1	
	동 대 문							1						1	
	신 설 동							1						1	
	제 기 동							1						1	
	청 량 리							1						1	
	운 전 사 명 실								1					1	
	승 무 관 리 소								1					2	
	소 계							10	2					12	
공무파	공 무 소								1			3		4	
저차파	차량공작소								1	1				2	
전기파	전 력 사 명 실										9			9	
	전 기 소									1				2	
	신호보안소										4			4	
	통 신 소									1	14		4	4	
	소 계												4	19	

기												능												제											
6												7																							
운	운	전	통	신	전	차	기	선	소	운	운	전	통	신	전	차	기	선	소	운	운	전	통	신	전	차	기	선	소						
수	전	기	선	호	수	공	토	제	수	운	전	기	선	호	수	공	토	제	수	운	전	기	선	호	수	공	토	제	수	전	기	선	소		
9	25	5	3	3	3	1	2	51	72	24	5	3	3	3	3	4	2	116																	
1										1	8																						8		
1										1	9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6										6																								6	
19										19																								24	
9	25									34	72	24																					96		
										2	2																							2	
										3	1																							6	
										5																									5
										3																									3
										3																									3
										5																									11
										3																									11
										11																									11

49-18 제 456 호

시 보

1974.8.6.

구 分		기 능 치																					
군유 및 등급별		8						9															
직 종 별	기 판 별	운	운	전	통	신	전	기	선	창	소	운	운	전	통	신	전	기	선	영	창	소	
		수	전	기	신	호	수	공	로	원	계	수	전	기	신	호	수	공	로	선	원	계	
합 계		149	22	5	6	6	12	6	6	1	213	129	11	7	3	6	6	4	7	3	5	83	
경리과	창 고																					3	3
운수과	서울역 앞	19										19	19										19
	시 청 앞	15										15	27										27
	종 각	17										17	15										15
	종로 3 가	15										15	13										13
	종로 5 가	15										15	5										5
	동 대 문	15										15	13										13
	신 설 동	19										19	21										21
	제 기 동	15										15	3										3
	청 량 리	19										19	13										13
	운전사령실											22	11										11
승무관리소		22																					140
	소 계	149	22									171	129	11									12
공무과	공 무 소											2	6	8							2	7	3
처차과	차량공작소											12	4	1	17							2	10
전기과	전력사령실											1											9
	전 기 소											4											9
	신호보안서											6											6
	통 신 소											6											3
소 계				5	6	6						17		7	3	6	2						18

제 456 호 시 보 1974.8.5. 49-19

기 능 적																					
10						11			13			기 능 적 제									
운	운	전	통	선	전	기	선	소	전	선	소	운	운	전	통	선	전	차	검		
수	전	기	실	호	수	공	토	계	기	수	로	재	기	계	수	전	기	실	호	수	
42		10		3	5	4	9	73	3	5	2	10			40	82	35	15	21	36	
5								5							52						
5								5							56						
5								5							46						
5								5							42						
5								5							34						
5								5							42						
4									4						53						
4									4						31						
4									4						45						
															6						
															76						
42								42							40	82					
									1	9	10		2	2							
									5		5		5							36	
10									3		13	3			3				1		
											3							34			
																		21			
																		15			
10									3		16	3			3				35	15	21

19-20 계 456 호 시 보 1974.8.5.														
구 분	기 능 칙					고 용 원								합 계
	기 능 칙 계		고 용 원 계											
금류및통급별	기	선	영	창	소	운	전	경	통	선	정	연	보	소
직 중 별	기	선	영	창	소	전	비	실	로	리	탁	안	보	소
기 관 별	공	로	선	원	계	원	공	원	수	수	수	수	수	계
합 계	19	28	3	6	646	2	6	21	2	2	33	38	2	106 792
경리파	창 고				3	3		9						9 15
운수파	서울역앞					52						5	5	58
	시청앞					56						5	5	62
	중 작					46						3	3	50
	종로3가					42						3	3	46
	종로5가					34						3	3	38
	동 대 문					42						3	3	46
	신 설 동					53						6	6	60
	제 기 동					31						4	4	36
	청 향 리					45						6	6	52
승무파	운전사령실					6								7
	승무관리소					76								78
소 계					483						38	38	533	
공무파	공 무 소	6	28	3		37				2			2	43
전차파	차량공작소	8			3	47		12		33			45	94
전기파	전력사령실					1								10
	전 기 소	5				39	2	6					6	49
	신호보안소					21							2	27
	통신소					15			2				2	21
	소 계	5			76	2	6		2			2	12	107

별표제 1호

## 현업기 관설치표

기관명칭	위 치	기 관 장		기관별분장사무
		명칭	직 명	
서울특별시지하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리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보	지하철사업용 차재 의 출납, 보관 및 관리
제기동자재창고	제기동 892 의 70			
서울특별시지하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8-3	관리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보	지하철사업용 차재 의 출납, 보관 및 관리
영등포자재창고	영등포동 28-3			
서울특별시서울역 앞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역 앞 광장지하	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철 도원 6 등급	여객외취급, 수입금 관리, 열차의착발취 급 및 역사의관리 기 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 청앞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문역 제신부앞간 지하		"	"
서울특별시 종자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44 ~ 종로 2가의 5간지하	장	"	"
서울특별시 종로 3 가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가 92 ~ 종로 3가 69 간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 종로 5 가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124 의 8 ~ 종로 5가 51 간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 동대문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가 78 의 25 ~ 동대 문구 창신동 5#2 간지 하	역 장	"	"

기 관 명 칭	위 치	기 관 장		기 관별 분장사무
		명 칭	직 치	
서울특별시 신설동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5 의 24 ~ 신 설동 89 의 57 간지하	역 장	지방행정주사도 는 지방철도원 6 등급	여객의 취급, 수입 금관리, 열차의 차발취급 및 역사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제기동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51 앞 ~ 제기동 36 의 12 간앞	역 장	"	"
서울특별시 청량리 지하철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동동 620 의 69 ~ 대 왕상가 앞 광장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전사령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 로 5 가지 하철역사내	사령장	지방기제기과, 지방기제기사 또는 지방철도 원 6 등급	열차 및 차량의 운전 정리, 운전사고의 복구처리 및 여객의 수송에 관한지시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무관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 의 2 앞차고	소 장	"	여객의 수송관리 및 전차운전에 관한사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 의 75 앞 지하	소 장	지방로목기과 또는 지방로목 기사	선로 및 건조물의 관리, 개량 및 보수
서울특별시 지하철 차량공작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 의 75 앞 지하	소 장	지방기제기과 또는 지방기제 기사	전차의 점검, 수리 및 청소기 타전차의 유 지관리에 관한사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력사령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 로 5 가지 하철역사내	사령장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전기 기사	전력운송에 관한지 령 및 연락무인전 소의 운전 및

제 456 호

시 보

1974. 8. 5 49-23

기 관 명 칭	위 치	기 관 장		기 관별 분장사무
		명 칭	직 명	
				감시, 전력량집계와 작동정보의 전달, 전 력계통운용에 관한 기록, 집계 및 작성, 기타 부수 업무
서울특별시지하철 전기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 로 5가 역사내	소 장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전기 기사	송배전, 전차선, 역 사전기, 변전설비 및 원격설비 기 타 지하철용 전 기기제 및 시설의 용지 관리 및 보수
서울특별시지하철 신호보안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 로 5가역사내	소 장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전기 기사	신호보안소 설비 의 유지 관리 및 보수 기타 신호 보안 사령업무
서울특별시지하철 통신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 로 5가역사내	소 장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통신 기사	통신설비의 유지 관리 및 보수 기타 통신 사령 업무

별 표 제 2 호

## 현업기 관직원 별 사무 분장표

기 관 명	공 무 원		분 장 사 무
	종 류	직 명	
서울특별시 지하철제기동 자재창고외 1	사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행정서 기	관리장을 보좌하여 자체의 수급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창고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노수	관리장의 명을 받아 창고내 현금 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경비원	고용원	관리장의 명을 받아 창고의 경비업 무를 담당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역 앞 지하철역 외 8 역	조 역	지방철도원	역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역장을 보 좌하여 역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노수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사무, 수입금 관리, 물품의 관리 및 수불, 계급여 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지 도	지방철도원	역장의 명을 받아 승차권류의 청구, 수입금 관리, 창표류의 정리보고, 기타 역무지도업무를 담당하여 조역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무원		
	구 내원	지방철도원	역장의 명을 받아 차량의 입환작 업, 신호기 및 전철기의 취급과 정 비, 입·출고 차량의 유도 및 열차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역무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시발, 중차후의 구내점검 기타 부대 업무를 처리한다.  역장의 명을 받아 승차권류의 발매, 개찰 및 집찰, 여객의 유도 및 안내, 여객운임의정산, 기타 부대업무를 처리 한다. 특히 기사를 받았을 때에는 신호기 및 전철기의 취급에 종사할 수 있다.  역장의 명을 받아 역무원의 보조업 무와 역구내의 정리 및 경비업무 기타 장무에 종사하여 특히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역무원의 직무에 종 사할 수 있다.
	여객수고용원		
서울특별시 지하철주임 운전사령실	운전사령	지방철도원	운전사령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령실 장을 보좌하여 사령장 유고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전사령	지방철도원	열차의 운전관리, 운전사고 복구, 임 시 열차운행 등 차량운용업무 및 여 객운송에 관한 지시업무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무원의소	선임지도 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내 직원에 대하여 실기지도, 기술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전차 운전 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소장 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사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행정 서기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 서무, 수입 금 관리, 물품의 관리 및 수불, 제2 여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

29-26 제456호

시 보

1974.8.5

기·분·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서류를 처리한다.
지도차장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차장업무의 지도 기술 및 교양교육과 필요한 경우에 는 차내 경찰업무에 종사한다.
지도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운전기사의 실기 지도, 기술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승무감독 업무에 종사한다.
운용원	지방철도원		승무원의 근무표 작성 및 승무시간 의 규정, 운수통제, 기타 운전업무를 보조한다.
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열차 및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다만, 열차가 역외에 있을 때에는 차장, 열차가 역에 있을 때에는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장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소장의 명을 받아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의 운전에 따른 업무, 여객위급 차내 질서유지 기타 열차내 계반업 무에 종사하며 필요에 따라 역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 작업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무조	보선조역	지방철도원	소장을 보좌하여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관명	공무원		본장사무
	종류	직명	
	사무원	지방행정서기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사무, 수입금 관리, 물품의 관리 및 수불, 재급여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영성원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전속시설의 보수에 종사한다.
	기술원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공무소의 기술업무에 종사하여 소장 및 조역이 육교시에는 선로반장, 기공원 및 조기원을 지휘 감독한다.
	선로반장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선로 시설의 보수(保守)수리 및 용지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선로원 및 선로수를 지휘 감독한다.
	기공원	지방철도원 및 지방철도수	소장의 명을 받아 보선, 기체기구의 수선, 용접, 단아(鑄冶)작업, 조작 및 정비업무에 종사한다.
	조기원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모-터카, 비상용 자동차, 타이램퍼, 기타 소기계류의 운전정비업무에 종사한다.
	선로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소장 및 선로반장의 지시를 받아 선로시설의 보수, 수리 및 용지관리업무에 종사한다.

49-28 제 456 호 시 보 1974.8.5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서울특별시 지하철 차량공작소	신로수	교 용 원	소장 및 신로반장의 지시를 받아 신로원의 직무를 보좌한다.
	검수조역	지 방 철 도 원	소장을 보좌하여 차량검사업무에 종사하여 검수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공조역	지 방 철 도 원	소장을 보좌하여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재생 제작하고 소내 운반차 등의 취급, 정비 업무에 종사하여 기공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장 및 검수조역이 모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행정서기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사무, 수입금관리, 문쪽의 관리 및 수불, 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기술원	지 방 철 도 원	소장 및 기공조역의 지시를 받아 전차검사 및 분해, 통제보고, 기타 제반 기술 업무에 종사한다.
	검수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 방 철 도 수	소장 및 검수조역의 지시를 받아 전차의 경기 및 수시검사를 시행하며 차량보전 업무 및 사고 복구 업무에 종사한다.

기 관 명	공 무 원		분 장 사 부
	종 류	직 명	
	기 공 원	지 방 철 도 원	소장 및 기공조역의 지시를 받아 점수에 필요한 부품을 재생 제작하 고 일환차, 맷메리카, 기동기 및 사 고복구차 등의 장비에 대한 취급 및 정비업무에 종사한다.
	창 고 원	지 방 철 도 원	소장의 명을 받아 창고에 보관된 점수용 부품관리 업무에 종사한다.
	정 리 수 고 용 원		소장 및 경수조역의 지시를 받아 차량에 대한 청소, 소내 각종 정리 업무에 종사하여 특히 지시가 있을 때에는 경수원을 보조한다.
	경 비 수 고 용 원		소장의 명을 받아 차량 및 시설물 전반에 걸친 경비 업무에 종사 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주 전력사령 부	전력사령 부	지 방 전기 기 사 또는 지방전기 기사보	사령장을 보좌하여 전력운용에 대 한 지령 및 연락과 투인면전소의 운전 및 감시업무에 종사하며 사령 장 유고시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전력사령 원	지 방 전기 기사보, 지방전기기원보 또는 지방철도원	전력량의 집계, 변전소의 기록 집계 및 각종 경보의 전달, 기타 전력 제통 운용에 관한 기록 집계 업무 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기 소	전기조역	지 방 철 도 원	소장을 보좌하여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계획 및 작업의 지휘 감독 업무에 종사하며 소장 유고시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 관 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사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행정서 기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서부, 수입금 관리, 물품의 관리 및 수불, 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전기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조기원지방철도원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및 순회점검 과 예방정비 업무에 종사한다. 모터카 운전 및 보수 업무에 종 사한다.
	전 공고 용 원	전기원의 직무를 보좌한다.	
	운전원고용원	전기시설 보수용 차량운전 및 보수 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신호보안소	신호보안 사령주임	지방전기기사	소장을 보좌하여 운전보안설비 운영 의 감시, 장애 및 사고시의 응급조치, 장애 및 사고 복구후의 사정 확인, 보수 작업과 열차 운전에 영 향을 미치는 검사 및 작업의 통제 사령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각종 보고와 관계기관과의 연 락업무에 종사하며 소장 유고시 선 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55 호 시 보 1974.8.5. 49-31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신호보안 조 역	지방철도원	신호보안 설비의 보수 유지 관리 계획 작성과 보수 차제의 처리, 보 수작업의 지휘 감독 및 확인, 도표 류정비, 현업 중사원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시행업무에 종사한다.
	신호보안 사령관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보수작업 및 검사시의 수속 및 통 제, 사령업무, 보고 및 통보전달, 신 호장애, 사고발생 및 회복시의 조치 설비의 사용 불능시의 조치, 중앙장 치의 절경 및 보수업무에 종사한 다.
	신호보안원 보안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신호설비의 유지보수, 순회점검 및 예방 정비업무에 종사한다.
	조기원	지방철도수	모-터카 운전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한다.
	보안수고용원	원	신호보안원의 직무를 보조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통신소	통신사령 주임	지방통신기사	소장을 보좌하여 접수 제어되는 통 신소 설비의 조작 및 상대 간이 설비 사고시의 필요한 제어 및 수배업무에 종사하여, 소장, 육교식 선입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9-32 제456호

시 보

1974.8.5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통신조역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현업직원의 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통신검사 및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신검사의 분석처리 및 보고서 작성, 자재의 준비 및 수급 도표류의 작성 및 정비 기타 작업 안전 측정업무에 종사한다.
	통신사명원	지방철도수	통신회선의 기능 시험 및 진급 회 선 구성, 사령실내의 통신설비 업무 에 종사한다.
	통신원	지방철도원	통신설비의 검사, 유지 및 보수작업, 사고시의 응급 복구작업, 통신검사의 분석처리 및 보고서 작성, 자료의 준비 및 수급, 도표류의 작성 및 정리 기타 작업안전 측정 업무에 종사한다.
	통신수고용원		통신원의 직무를 보조한다.

## 고 시 사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3 호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중 창동 및 도봉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와 전설부

고시 제 123 호 (73. 4. 4) 외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26

서 울 특 별 시 장

## 가. 지 구 조 서

구 지 구 명	동	명	비 고
창동 및 도봉지구	창동, 도봉동, 생문동, 방학동 각 1부		

1. 서울도시계획도로 확정조서별첨

2. 확정도면별첨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 로 선 조 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	10 m	280m	도봉동	327	도봉동 333-2
		2	2	8 m	110	〃	1-1	〃 3-6
		3	〃	〃	118	〃	5-1	〃 8
		4	〃	〃	126	〃	20	〃 37
		5	〃	〃	109	〃	36-1	〃 41
		6	〃	〃	98	〃	22-3	〃 23
		10	〃	〃	90	〃	77-1	〃 74-5

19-34 제456호

## 시 보

1974.8.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쪽면	연장	기 점	총 점	비고
신설	소로	2	14	8 m	70 m	도봉동 78-10	도봉동 89 -7	
	"	"	15	"	334	" 82- 4	" 61	
	"	"	17	"	264	" 341-5	" 삼 6 - 1	
	"	"	18	"	200	" 341-6	" 286 - 1	
	"	"	19	"	236	방학동 산 53-1	방학동 304 - 1	
	"	"	20	"	130	" 304-3	" 305	
	"	"	21	"	168	" 307-1	" 276 - 2	
	"	"	22	"	756	" 264-1	" 277 - 3	
	"	"	23	"	340	" 248	성문동 36 - 10	
	"	"	24	"	456	" 264-3	" 삼 16	
	"	"	25	"	190	성문동 43-2	" 21 - 3	
	"	"	26	"	270	방학동 283-13	" 202 - 2	
	"	"	27	"	120	" 307-1	방학동 436 - 2	
	"	"	28	"	148	" 452	" 456	
	"	"	29	"	254	" 449	성문동 246	
	"	"	30	"	426	성문동 78-2	" 184	
	"	"	31	"	124	방학동 448	방학동 452	
	3	1	6m	15.8m	도봉동	1-11	도봉동 15 - 1	
	"	"	2	"	110	" 15-1	" 10	
	"	"	3	"	1280	" 8	" 62 - 8	
	"	"	4	"	270	" 368	" 362	
	"	"	5	"	2210	" 1-1	" 85	
	"	"	6	"	390	" 86	" 62-7	
	"	"	7	"	172	" 367-1	" 372	
	"	"	8	"	416	" 375	" 289	
	"	"	9	"	612	" 378	" 287-4	

제 456 호

서 보

1974.8.5 49-3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철	소로	3	10	6m	40m	도봉동 352-18	도봉동 342-1	
			11		84	〃 341-13	〃 342-1	
			12		304	〃 333-2	〃 384-5	
			13		286	〃 289	〃 266-3	
			14		400	방학동 산 40-3	방학동 307-1	
			15		482	〃 318-1	〃 283-17	
			16		312	〃 산 52-1	〃 산 36	
			17		260	〃 318-2	〃 304-5	
			18		130	〃 317	〃 304-3	
			19		80	〃 302	〃 304-3	
			20		144	〃 279-2	〃 278-8	
			21		392	〃 265	쌍문동 산 13-2	
			22		130	쌍문동 30	〃 31-10	
			23		384	〃 36-1	〃 19	
			24		224	〃 38-5	〃 23-7	
			25		360	방학동 263-11	〃 산 16	
			26		304	쌍문동 7	〃 산 9	
			27		60	〃 194-1	〃 194-2	
			28		130	〃 산 29-2	〃 202-2	
			29		500	방학동 194-11	방학동 275-2	
			30		344	〃 294-3	쌍문동 산 29-2	
			31		190	〃 293	방학동 283-10	
			32		192	〃 283-11	쌍문동 221	
			33		252	〃 283-3	〃 222-2	
			34		200	〃 283-4	〃 241-2	
			35		320	〃 283-18	〃 240-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총 점	비고
신설	소로	소 3	36	6"	170	방학동 276-3	방문동 산 71	
"	"	"	37	"	64	" 280-1	방학동 280-1	
"	"	"	38	"	62	" 281-3	" 283-12	
"	"	"	39	"	176	" 444-3	" 447-1	
"	"	"	40	"	93	" 444-20	" 443	
"	"	"	41	"	130	" 445-6	" 446-1	
"	"	"	42	"	164	" 275-1	방문동 243-3	
"	"	"	43	"	118	" 486-2	방학동 485-2	
"	"	"	44	"	284	" 458	" 493-2	
"	"	"	45	"	274	" 460	" 492-3	
"	"	"	46	"	158	" 477	" 472	
"	"	"	47	"	260	" 500-4	" 493	
"	"	"	48	"	106	" 484-3	" 483-2	
"	"	"	49	"	394	방문동 45-19	방문동 산 87	
"	"	"	50	"	292	" 67-5	" 56	
"	"	"	51	"	280	" 67-2	" 187-1	
"	"	"	52	"	130	" 70-2	" 69-2	
"	"	"	53	"	366	" 산 21	" 산 87	
"	"	"	54	"	334	" 187-1	방문동 산 86	
"	"	"	55	"	98	" 산 90	" 산 86	
"	"	"	56	"	156	창동 산 10	창동 산 17	
"	"	"	57	"	124	" 297-4	" 304	
"	"	"	58	"	130	" 산 11	" 산 17	
"	"	"	59	"	215	" " 17	" 701	
"	"	"	60	"	120	" " 17	" 698	
"	"	"	61	"	226	687	" 70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절	종 절	비 고
신설	소로	소 4	1	4 m	160	도봉동 1-11	도봉동 15-2	
		"	2	"	108	" 15-1	" 11	
		"	3	"	50	" 323-1	" 326	
		"	4	"	34	방학동산 53-1	방학동산 53-1	
		"	5	"	360	" 283-14	" 277-2	
		"	6	"	496	" 285-1	" 277-2	
		소 3	7	"	230	" 296	" 285-13	
		"	8	"	288	" 284-1	" 263-18	
		"	9	"	250	" 249	" 163-10	
		"	10	"	126	" 277-2	" 451	
		"	11	"	126	" 277-2	" 451	
		"	12	"	326	" 483-1	" 491-1	
		"	13	"	240	" 484-1	" 491-1	

## ◎서울특별시고시 제 104 호

도 시 계획 시 설  
(도시고속철도) 지적승인

1.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도시고속철도) 제1호선 차고인입선 일부 구간에 대한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 도시계획법제13조 및 건설부 고시제가. 지적승인조서

123호(73.4.4)의 규격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지하철본부 및 동대문구청서 민봉사실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8. 1.

서 울 특 별 시 장

명 칭	위 치	폭(m)	연 장(m)	비 고
1호선인입선	동대문구 신설동 97-13 " 용두동 76-15	9.6 - 17.6	780	
별첨: 도면표사와 같음(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지하철건설본부 및 동대문구청에 보관함.				

49-38 제 456 호 시

보 1974.8.5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5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 1류 5호선 일 부구간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  
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8. 1.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광로	5	50 <sup>m</sup>	10,900 <sup>m</sup>	오간수교	상일동지계	광진교부문로 광 5 교축 소
변경	"	5	25-50	10,900	"	"	백제로성부문 위치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출장소)에 보관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6 호

## 도시계획시설(소로)

##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구역 중 홍제지구 도시계획시설(소로)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  
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결  
정. 지구 조서

설 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8. 1.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동명	비고
홍제지구	홍제동	
1. 서울도시계획도로 확정 조서별첨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함.
2. 서울도시계획도로 확정 도면		

제 456 호 시 보 1974.8.5 49-39

토 선 조 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소로	2	1	8회	159m	홍제동 280-2	홍제동	279-36		
"	"	2	"	445	"	"	8-77		
"	"	3	"	138	"	287-5	"	267-7	
"	"	4	"	1,300	홍제교	"	361-32		
"	"	5	"	338	홍제동 306-2	"	312-20		
"	"	6	"	392	"	173-29	"	318-17	
"	"	7	"	121	"	104-8	"	105	
소로	3	1	6회	362	"	283-3	"	5-90	
"	"	2	"	331	"	6-1	"	6-94	
"	"	3	"	585	"	273-34	"	8-77	
"	"	4	"	139	"	267-7	"	267-44	
"	"	5	"	232	"	268-112	"	산 5-11	
"	"	6	"	146	"	174-19	"	201-21	
"	"	7	"	254	"	174-9	"	136-14	
"	"	8	"	98	"	332-12	"	330-226	
"	"	9	"	119	"	334-1	"	331	
"	"	10	"	475	"	367-2	"	361-20	
"	"	11	"	506	"	361-24	"	369-6	
"	"	12	"	172	"	361-37	"	341-7	
"	"	13	"	167	"	345-2	"	356-31	
"	"	14	"	237	"	361-8	"	354	
"	"	15	"	126	"	312-21	"	312-114	
"	"	16	"	364	"	306-8	"	312-16	
"	"	17	"	109	"	176-7	"	136-3	
"	"	18	"	163	"	137-25	"	130-3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7 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고속철도)

사업 실시 계획인가

1.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도시고속 철도) 제 1호선 차고 일입선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하철본부 및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8. 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시행지 : 동대문구청앞-점  
능천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고속철도  
제 1호선 차고  
일입선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 1)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7일 이내
  - 2) 준공 : 75.12.30
5. 재원 : 제 1,722,800,000 원
- 1) 토목공사 : 1,600,000,000 원
  - 2) 궤도연장공사 : 115,000,000 원
  - 3) 전기공사 : 7,800,000 원

## 6. 인가 내용

구분	명칭	위치	폭(m)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지하고속철도	동대문구청앞-점능천		9.6 - 17.6	780	-	

별첨 : 도면표지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지하철본부, 동대문구청에 보관

##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7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증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증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한다.

1974. 7.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금의 회전대출) 대출에 의  
하여 회수된 자금 범위내에서 회전대  
출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요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이 요강은 시행이전에 이미 대출  
된 자금은 이 요강에 의하여 대출  
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8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산업화, 전문  
체열화, 기업 합병 및 시설근대화자  
원 자금집행요령증개정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31호(74.2.22)로  
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산업화, 전문체열화, 기업 합병 및  
시설근대화 지원자금 집행요령증 나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산업화, 전  
문체열화, 기업 합병 및 시설근대화 저  
원자금 집행요령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1 중 2 응자대상업종 및 품목의  
시설근대화 지원자금란「다」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다」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을 철하  
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된 협동조합가입자, 다만 해당 업종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신규발주업체는 시설완료  
와 동시에 공장등록 및 협동조합 가  
입이 행각서 제출자로 하고 설유류제를  
생산자중 상공부장관이 정한 설유시설

49-42 제456호 시

보 1974.8.5.

등록요령(상공부공고 제6238호. 71. 1.6)에 의거 등록을 요하는 자는 등록에 의거 등록을 철한 자라야 한다.

별표2 중 3 지원적격요건의 시설근대화 지원자금란 「가」호 및 「나」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서울특별시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및 등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체 중 노후시설(전물 및 기계)의 개체, 보완 및 시설의 확장을 차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1) 새로운 시설투자에 의하여 생산 규모를 적정화 하려는 업체
- (2) 노후시설의 개체에 의하여 생산 성의 향상,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이 기대되는 업체
- (3) 시설투자 적정화에 의하여 수출

의 회기적인 증대 또는 새로운 수출 및 전환이 가능한 업체나. 신규발주업체로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전물 및 기계)을 차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업체

##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3조, 동 제4조 및 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업체와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7. 29

서울특별시장

##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1031	한국종합물신(주)	장 강재	성북구상계동 1107-3	엘 범
502	주식회사 소니	김 광중	성북구석관동 341-15	완 구
303	신풍제약사	장용택	동대문구면목동 358-1	인삼차

제 456 호 시 보 1974.8.5. 49-33

지정 번호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수 출 품 명
602	삼 랄 설 유(주)	신오균	서대문구연희동 374-4	염색가공
1513	경 기 산 업(주)	이명식	영등포구동촌동 151-2	양말
914	태양모직 공업(주)	천익준	영등포구문래동 6 가 34	방모직
1519	광명듯판인쇄(주)	이학수	영등포구동촌동 151	인쇄물
1527	신영전자공업(주)	조재우	영등포구영창동 122	시리콘, 다이오드
1528	삼신유리기업사	이영규	영등포구동촌동 294-2	가정용 유리제품
609	아미전기(주)	김성원	서대문구홍제동 279-94	스트레오 라디오카센
918	한국상역공사	장경환	영등포구오류동 77	제털이, 쇠기
1124	오오상사	탁한구	관악구봉천동 478-28	목제완구
			성동구신당동 289-71	목제인형

## 2. 지정 취소업체

지정 번호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수 출 품 명	취 소 사유
512	해창공업사	김치만	성북구정릉동 383-41	에 타	행정자치부이행
519	이생산업(주)	이원훈	성북구장위동 76	가 말	대기업체로전환
506	대건진흥(주)	변경기	성북구하월곡동 90	직물나연	"
503	성일산업(주)	성일기	성북구하월곡동 88-62	자수직물	"
514	대북메리아쓰공업사	김의명	성북구하월곡동 88-6	메리아스	"
524	조광피혁	이영근	성북구하월곡동 90-40	피혁	"
529	삼미설유	김동호	성북구하월곡동 90	봉제품	"
308	정안설유공업(주)	김화용	동대문구휘경동 251	메리아스	"
301	한성실업(주)	김용순	동대문구달심리동 384	직물의아사스	"
309	대신편물공업(주)	강용수	동대문구달심리동 464	에 타	"
319	휘안산업(주)	박만규	동대문구면목동 1049-695	에 타	"
1020	빅토리아엘범(주)	이설수	도봉구상계동 1107-3	에벌	제업
427	홍창물산(주)	손정수	서대문구불평동 310-222	제. 불름	대기업으로전환

49-44 제456호

보 1974.8.5.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50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  
업체 대체 지정 및 변경 공고

당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의 기업체명과 소재지 변경 및 대

표자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7.29

서울특별시장

## 1. 대체 지정

지정 취소					대체 지정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929	도진 산업사	영등포구천 왕동246-4	박병호	에타	929	도진 통상(주)	영등포구천 왕동246-4	박병기	에타

## 2. 변경 지정

변경 전					변경 후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1525	대영화학 공업(주)	영등포구목 동191-40	고광용	합성수지 제 품	1525	대영화학 공업(주)	영등포구목 동191-40	박경태	합성수지 제 품
902	동양식품 상 사	관악구대방 동304-54	정영삼	화입해비	919	동양식품 상 사	영등포구문 래동4가4	정영삼	화입해비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51 호

미수집 중기검사회 고 및 등록  
취소(예고) 공고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중기의 소유자  
로서 소정의 중기검사를 기한내에 받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고 계속 미필자  
에 대하여는 해당 중기의 등록을 취  
소하겠습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1974. 7.30

서울특별시장

1. 검사요령	주택개량을위한서빙고제 1. 고체.
가. 검사대상	부아현제 2구역 및 아현제 2구역
○ 신규등록검사 ○ 계속검사	1차환지계획공람공고
나. 검사기한: 74.8.31	1. 진설부고시 제 145호(74.5.13)로
다. 검사장소: 현재 중기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중기검사관청	사업실시인가된 서방고 1. 고체. 부아 현제 2구역 및 아현제 2구역 1차환
라. 근거법규	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86
○ 중기관리법 제 12조	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 중기검사규정 제 6조 및 제 7조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관제도서를
2. 만약 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중기관리 법 제 5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합니다.	주택국 개량 2파에 비치하여 공고일 로부터 14일간 사업지구내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 으며
3. 저당 또는 압류 등록된 중기가 위 기간내에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기관리법 제 5 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합니다.	2.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 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중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는 중기관리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별통지할 것이나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는 자 에게는 이 공고로 알을합니다.	1974.7.30
◎서울특별시 공고제 153호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고제 155호	환지계획(일부변경) 공람공고
	1. 역촌, 경인도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 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49-46 제 456 호

시

보 1974.8.5.

<p>조, 제 55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풍합 니다.</p> <p>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p> <p>3. 서류승달은 별도 환지계획변경에 관련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통지할 것이나 수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4. 변경조서; 별첨 첨부; 관계도면(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1974.8.1</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사 명       </div> <p>◎ 1974.7.29 회·계·과·주·사·보 서보경 지방행정 주사에 주서함</p> <p>◎ 1974.8.1</p>	<p>· 심상전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한대인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마포구근무를 명함. 시민회관장 직 박 부 안찬희 서울특별시 근무를 명함. 구의수원지 사무소 기원 김종열 독도수원지사무소 파견(74.9. 20까지)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기계 원 박주남 청소 2과 파견(74.11.30까지) 근무를 명함. 부녀과 지방행정 조성배 시정개발담당관실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신연희 부녀과근무를 명함. 아동병원(임상병리) 지방보건 서대문병원파견근무를 명함.</p>
---	---

영등포병원 지방보건 (임상병력) 기원보사보	조인봉	도봉구 지방행정 기획과	공통 철
아동병원과 전근무를 명함.		남부녹지사업소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농림 서예문구녹지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김용태	영동출장소 지사보	김재상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민봉사실 서기보서보	문종래	판악구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과 전근무를 명함.			
녹지과 농림기사	박용복	② 1974.8.5.	
지방농림기사에 입함.		경북대구식 동구 서기보	허현암
2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전일을 명함.	
서예문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입함.	
남부녹지 지방농림 사업소 기사	양상우	5호봉을 급함.	
도봉구근무를 명함.		용산구근무를 명함.	금영세
불암공원 지방농림 관리사무소 기사	조두환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마포구근무를 명함.		「호봉을 급함.	
성북구 지방농림 서예문구 기사	오임규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김호설
중구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서보에 입함.	
서예문구 지방농림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윤종덕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지방농림 온평출장소근무를 명함.	국웅설	마포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길금황
마포구 지방농림 복암공원관리사무소근무를 명함.	이수원	지방보건기원보사보에 입함.	
온평출장소 지방농림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유금중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근무를 명함.	

신영애	김숙형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근무를 명함. 박준심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근무를 명함. 조우화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이미애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양순주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고영순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근무를 명함. 이종선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나경숙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지방토목 서대문구근무를 명함. 한강지방토목 건설사업소 기사 영동출장소근무를 명함. 도시지방토목 가스사업소 기사 성북구수도사업소근무를 명함. 도봉구보건소 지방의무 장 직무대리 기사 지방의무기정에 입함. 박주오 안근필 김영세 신기준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노명순	

제 456 호

시

보

1974.8.5.

49-47

2호봉을 굽함.

도봉구보전소장에 명함.

성동구보전소 지방의무  
장 직무대리 기록

지방의무기정에 임함.

2호봉을 굽함.

성동구보전소장에 명함.

박인섭

③ 1974.8.10

강원도 지방간호  
설비군보전소 기원보시보 박일봉

서울특별시검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굽함.

동대문구보전소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